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가 및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조정 : 600명 ⇒ 618명(증18)

○ 기관별 정원 조정

- 집행기관 정원 : 589명 ⇒ 607명(증18)
 · 본　　청 : 293명 ⇒ 300명(증7)
 · 직속기관 : 90명 ⇒ 96명(증6)
 · 사 업 소 : 46명 ⇒ 43명(감3)
 · 읍 · 면 : 160명 ⇒ 168명(증8)
- 의회사무기구 정원 : 11명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○ 예산조치 : 기준인건비 반영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8. 10. 2 ~ 10. 8)
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8497(2018.10.1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정원 총수와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 기관별 직급 정원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

○ 지역인구, 면적, 사업체수, 자동차수 등 일반지표와 인허가 등 업무관련 지표 등 각종 행정지표 분석을 통해 결정된 행정안전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정원 600명에서 61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